

2018년 02월

농식품 통관거부 및 식품안전사례 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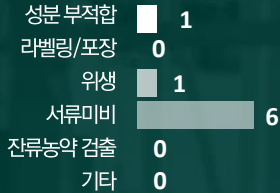
- I.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
 -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 III.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1.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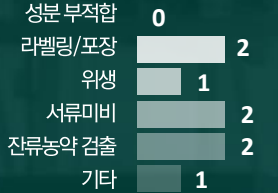
중국

한국산 8건 (17년도 39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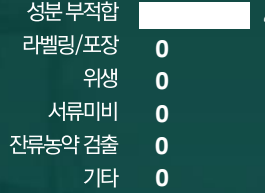
미국

한국산 8건 (17년도 21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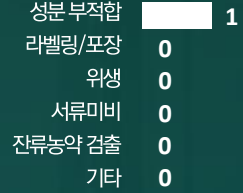
일본

한국산 4건 (17년도 1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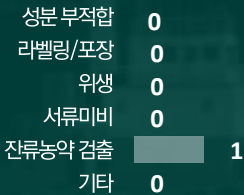
호주

한국산 1건 (17년도 6건)



대만

한국산 1건 (17년도 37건)



EU

한국산 0건 (17년도 10건)

러시아

한국산 0건 (17년도 1건)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제품별 현황

해조류 / 총 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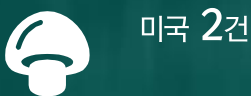
기타조제 농산품 / 총 4건



과자류 / 총 4건



버섯류 / 총 2건



어류 / 총 2건



캐나다의 경우, 2018년 2월 통관거부 사례가 홈페이지에 미개재되어 확인이 불가능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중국 2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8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중국	2월	참치	수산물	어류	서류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2월	견과	농산물	과실류	위생	곰팡이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중국	2월	김	수산물	해조류	서류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2월	김	수산물	해조류	서류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2월	김	수산물	해조류	서류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2월	김	수산물	해조류	서류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2월	김	수산물	해조류	서류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2월	탄산음료	농산물	음료	성분	비타민 B2 사용범위 초과	폐기 또는 반송

미국 2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8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미국	2월	-	농산물	버섯류 (농산물)	성분	잔류농약 검출	-
미국	2월	-	농산물	버섯류 (농산물)	성분	잔류농약 검출	-
미국	2월	-	수산물	어류	위생	비위생 환경에서 제조	-
미국	2월	-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라벨링	영어로 미표기	-
미국	2월	-	농산물	채소류	라벨링	영어로 미표기	-
미국	2월	-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기타	미등록 업체	-
미국	2월	-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서류	인증서류 미비	-
미국	2월	-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서류	인증서류 미비	-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일본 2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4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일본	2월	스낵	농산물	과자류	성분	지정 외 첨가물 검출	폐기 또는 반송
일본	2월	스낵	농산물	과자류	성분	지정 외 첨가물 검출	폐기 또는 반송
일본	2월	감자칩 스낵	농산물	과자류	성분	지정 외 첨가물 검출	폐기 또는 반송
일본	2월	감자칩 스낵	농산물	과자류	성분	지정 외 첨가물 검출	폐기 또는 반송

호주 2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1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호주	2월	다시마	수산물	해조류	성분	요오드 기준치 초과	-

대만 2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1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대만	2월	딸기	농산물	과실류	성분	잔류농약 검출	폐기 또는 반송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중국 Case. 한국 김 제조업체, 인증서류 미비로 통관거부

2018년 2월, 한국 김 제조업체 2곳은 중국에 김을 수출하였으나, 제출 서류 미비로 산둥에서 총 5건이 통관거부 처리되었음.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검역총국(AQSIQ)가 발표한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에 따르면, 제품 수입 신고 및 검역 검증 시에는 품질 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농약 및 첨가제 사용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검역총국(AQSIQ),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12/201210/t20121015_235105.htm

중국 Case. 음료, 비타민 B2 사용범위 초과로 통관거부



2018년 2월, 한국의 음료 제조업체가 음료를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비타민 B2의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요녕에서 통관거부 처리되었음.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GB 14880-2012(식품영양강화제사용표준,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은 소비자의 영양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식품 카테고리별 영양강화제의 사용범위를 명시한 것임. 해당 지침에 따르면, 비타민 B2 사용 기준치는 우유 음료 1~2mg/kg, 고체 음료 9~22mg/kg으로 규정되어 있음

▷ 중국 위생부, 「식품영양강화제사용표준,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http://bz.cfsa.net.cn/staticPages/002D3B53-DE13-42C1-B099-C57EC501138A.html>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미국 Case. 인삼차 제품, 서류 미비 및 라벨링 문제로 통관거부

한국 내 인삼을 가공하여 차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서류 미비 및 라벨링 문제로 통관거부 처리됨. 미국 식품 의약품 비상 허가 통제 (Emergency Permit Control) 21 CFR Part 108에 의하면 비허가 기간 중 제조, 가공, 포장된 모든 식품은 FDA의 서면화 된 승인이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해당 식품이 위험한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승인이 허가됨. 한국 내 식품 제조사, 가공자, 포장자는 위생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 사항을 FDA에 서류로 제출해야 함



또한 미국 내 식품 수출시 라벨링 내 영양 정보, 일일권장 섭취량, 실제 함유량 등의 정보들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해야 함. FDA는 라벨링 영어 표기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인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에 의거하여 제품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라벨링내 한국어로 표시된 항목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미국, 「식품 의약품 비상 허가 통제, 21 C.F.R. Part 108」,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108&showFR=1>
- ▷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21 C.F.R. 201.15」,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a35a640633ced00c949107047d339060&mc=true&node=se21.4.201115&rgn=div8>

미국 Case. 멸치 제품, 비위생적 제조, 생산 및 포장으로 통관거부



2018년 1월, 한국 내 멸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하여 미국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Section 801(a)에 의거하여 통관거부 처리됨. 해당 사항은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되었을 경우 적용됨. 따라서 한국 수출 업체들은 제품 생산, 포장, 보관 및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따라야 함. 제조품질관리기준 관련 세부 규정은 U.S. Code § 360j – General provisions respecting control of devices intended for human use Section 360j(f)에 기재되어 있음

- ▷ 미국,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Section 801(a);」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num=0&edition=prelim>
- ▷ 미국, 「U.S. Code § 360j – General provisions respecting control of devices intended for human use Section 360j(f)」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1/360j>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일본 Case. 한국산 스낵, 지정 외 첨가물 검출로 통관거부

2018년 2월, 한국의 한 제과 전문 업체는 감자칩 종류 스낵을 일본으로 수출 하였으나, 산화방지제 중 하나인 TBHQ(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가 2 μg / g 검출 되어 통관이 거부됨. 이후 폐기 또는 반송처리됨. 지정 외 첨가물 검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외 동 제조사의 다른 제과 제품 3건 역시 같은 이유로 통관이 거부됨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은 식품위생법(Food and Sanitation Act, FSA) 제 10조에 따라 식품 첨가물을 지정하고 있음. 해당 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이 검출될 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일본 후생노동성 지정 식품 첨가물 (Designated Additives)

<http://www.mhlw.go.jp/english/topics/foodsafety/foodadditives/>

<http://www.ffcr.or.jp/en/tenka/list-of-designated-additives/list-of-designated-additives.html>



호주 Case. 한국산 다시마, 성분 기준치 초과로 통관거부

2018년 2월 한국의 한 식품업체는 다시마를 호주로 수출하였으나, 식품성분 기준치를 초과하여 통관이 거부됨. 해당 물질인 요오드(Iodine)의 기준치는 1,000mg/kg dry weight이나,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4,200mg/kg dry weight가 검출됨

호주 농수산 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의 BSW 12/2016에 따르면, 분류군이 갈조강(Phyophyceae 혹은 Phaeophyceae)에 속하는 건조, 신선 혹은 냉동 상태의 식용 갈조류는 위험식품으로 분류되어 위험요소 테스트를 실시하며, 갈조류(Brown Algae/Seaweed Vegetables)에 대한 요오드의 기준치는 최대 1,000mg/kg dry weight로 규정되어 있음

▷ 호주 농수산 자원부, 갈조류 관련 검출성분 규정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inspection-compliance/risk-food/brown-algae-seaweed>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대만 Case. 한국산 딸기, 농약성분 기준치 초과로 통관거부

2018년 2월 국내 한 청과물 전문 수출업체는 대만으로 딸기를 수출하였으나, 잔류 농약 성분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가 0.09ppm, 피리벤카브(Pyribencarb)가 0.06ppm이 검출되어 통관이 거부됨. 이후 폐기 혹은 반송 처리됨



대만 위생복지부가 발표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은 성분에 따른 잔류 농약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음.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따르면, 해당 상품에서 검출된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의 잔류 농약 기준치는 0.01pp이며, 피리벤카브(Pyribencarb)는 검출이 금지된 성분임

▷ 대만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15조 【法規內容】

<http://www.6law.idv.tw/6law/law3/%E6%AE%98%E7%95%99%E8%BE%B2%E8%97%A5%E5%AE%89%E5%85%A8%E5%AE%B9%E8%A8%B1%E9%87%8F%E6%A8%99%E6%BA%96.htm>

Food Import Refusa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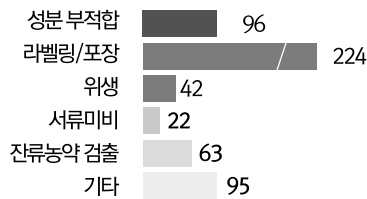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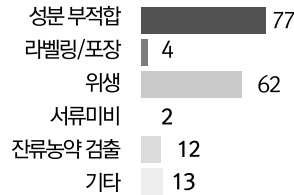
미국

총 54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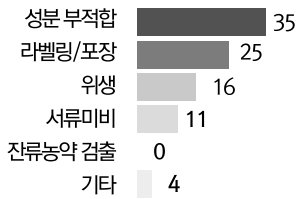
EU

총 170건



중국

총 9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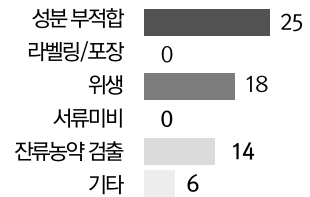
대만

총 76건



일본

총 63건



러시아

총 40건



호주

총 33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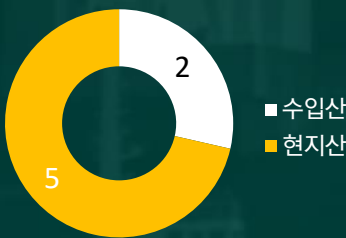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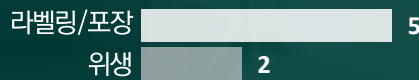
한국산 0건 / 총 7건

2018년 2월 동안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¹⁾ 건수는 총 7건으로 현지산 5건, 수입산 2건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스웨덴과 인도에서 발생한 것임.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으로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미표기하였고, 2위는 위생 문제로 제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음. 제품별로는 빵, 캔디 등 과자류가 가장 많이 리콜되었고, 코코아류, 아이스크림 포함 기타 조제 농산품이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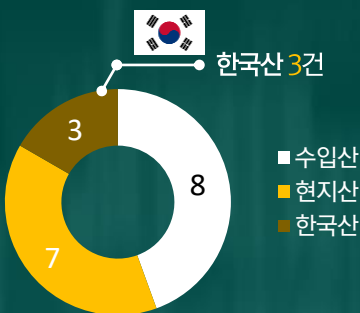


캐나다

한국산 3건 / 총 18건

2018년 2월 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8건으로 수입산 8건, 현지산 7건, 한국산 3건인 것으로 조사됨. 한국산 제품 모두 라벨링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미표기한 사유로 리콜되었으며, 그 중 2건은 코코아 비스킷, 1건은 해조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으로 금속 및 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었음. 수입국가 중 미국이 총 5건으로 가장 많이 리콜되었으며, 제품별로는 과자류 3건, 기타 조제 농산품 2건, 소스류 2건 등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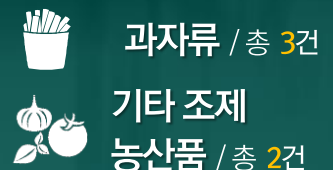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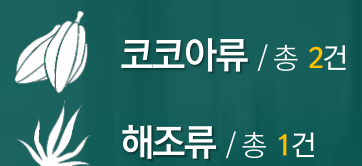
< 리콜 제품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 한국산리콜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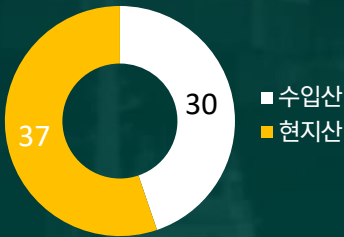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 사례를 의미함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EU** 한국산 0건 / 총 67건

2018년 2월 동안 EU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67건으로 수입산 30건, 현지산 37건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터키, 파키스탄, 중국, 인도 등에서 발생하였고,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성분 부적합으로 유해물질이 발견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첨가물이 검출됨. 2위는 위생으로 제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금속, 유리 조각 등이 발견됨. 리콜 제품은 과실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기타 조제 농산품, 향신료, 낙농품 등이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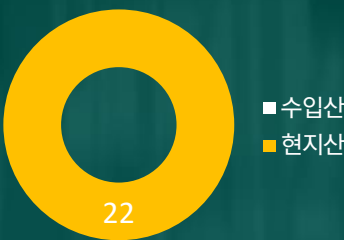
< 리콜 제품별 현황 >



 **일본** 한국산 0건 / 총 22건

2018년 2월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2건으로 22건 모두 현지산인 것으로 조사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미표기하거나 유통 기한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많았음. 2위는 위생으로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미생물이 발생하였음. 제품별로는 과자, 케이크, 사탕 등 과자류에서 가장 많은 리콜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코코아류, 기타 조제 농산품이 각각 5건, 2건씩 집계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제품별 현황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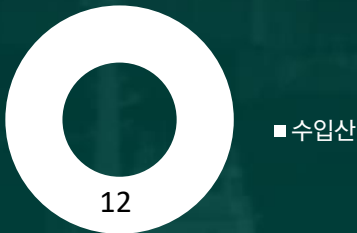


필리핀

한국산 0건 / 총 12건

2018년 2월 동안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2건으로 모두 수입산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미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으로 총 4건의 리콜이 발생함. 리콜 사유는 모두 기타로 제품 등록 절차를 불이행한 것임. 제품별로는 기타 조제 농산품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실류, 포유 가축 육류가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기타 12

< 리콜 제품별 현황 >



기타 조제

농산품 / 총 4건



과실류 / 총 3건



포유 가축 육류 / 총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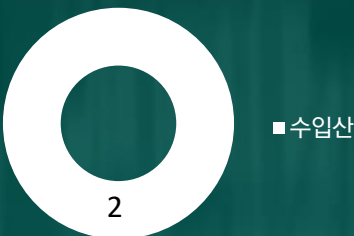


홍콩

한국산 0건 / 총 2건

2018년 2월 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건으로 모두 수입산이며, 2건 모두 프랑스산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산은 발견되지 않음. 리콜 발생 사유는 모두 위생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각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와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 제품은 각각 햄과 조개에 해당하는 기타 육류와 연체 동물임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위생 2

< 리콜 제품별 현황 >



기타 육류 / 총 1건



연체동물 / 총 1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싱가포르

한국산 0건 / 총 1건

2018년 2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건으로 말레이시아산인 것으로 조사됨. 싱가포르에서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파악되었음. 이에 싱가포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리콜 조치를 취함. 해당 제품은 커피류임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기타 1

〈 리콜 제품별 현황 〉



커피류 / 총 1건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미국 : 미국 환경 보호국(EPA), 테부코나졸 유제 허용 기준 수정

미국 환경부는 인삼 및 신선식품, 건조식품 내 테부코나졸 유제(Tebuconazole)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수정함. 테부코나졸 유제는 식물 병원성 잔균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임. 품목별 테부코나졸 유제 허용 기준은 하기 관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 관련 링크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5/16/2018-10345/tebuconazole-pesticide-tolerances>

<https://www.gpo.gov/fdsys/pkg/CFR-2017-title40-vol26/xml/CFR-2017-title40-vol26-part180.xml>

미국 : FDA, 식품 안전 현대화 법 가이드 발간

미국 FDA는 식품 안전 현대화 법 관련 4가지 규정의 가이드를 발간함. 관련 규정은 하기와 같으며 규정별 세부 가이드는 관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 식품 제조 관행 및 위해 분석에 대한 통제 (21 CFR part 117)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동물 관련 식품 제조 관행 및 위해 분석에 대한 통제 (21 CFR part 507)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 식품 생산, 수확, 포장 또는 보유 관련 기준 (21 CFR Part 112)
(Standards for Growing, Harvesting, Packing, or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 식품 수입자를 위한 외국 공급자 확인 프로그램 (21 CFR Part 1, Subpart L)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or Importers of Food for Humans and Animals)

▷ 관련 링크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proposals/Pages/P1044PlainEnglishAllergenLabelling.aspx>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607313.pdf>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캐나다 : PAC Packing, 포장 개발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포장 체크리스트' 발표

캐나다 포장 밸류 체인 관련 비영리 집단인 PAC(Packing Consortium)은 '지속가능한 포장 체크리스트'를 발표함. 레이첼 모리어(Rachel Morier) PAC Sustainability 담당 이사는 “더 많은 기업과 포장 관련 공급 업체에게 순환 경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포장 체크리스트가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언급함

▷ 관련 링크

<http://www.foodincanada.com/food-in-canada/pac-packaging-introduces-sustainability-checklist-139638/>
<http://www.pac.ca/ePromos/promos/pac0945/pac0935-checklist-structural.pdf>

캐나다 : 타마린드 껌, 식품첨가물로 사용 허가

캐나다 보건부는 타마린드껌을 다양한 식품에 점조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타마린드껌은 쌀과 타마린드(Tamarindus indica Linne)의 종자 배유부분을 온수나 열수 또는 알칼리성수용액으로 추출하여 얻어지거나 또는 이를 효소(β -galactosidase)처리한 것임. 세부 식품 관련 규정 및 수치는 관련 규정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 관련 링크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public-involvement-partnerships/modification-permitted-emulsifying-gelling-stabilizing-thickening-tamarind-gum.html>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food-safety/food-additives/lists-permitted/4-emulsifying-gelling-stabilizing-thickening-agents.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호주 : 호주 수자원농업부, 수입 배추 종자에 살균 처리 의무화 초안 발표

호주 수자원농업부는 병원체 감염 위험을 관리하고, 호주 채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브로콜리, 양배추 등 수입용 배추과 종자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살균 처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발표함. 호주 수자원농업부는 최근 수입용 배추과 종자에서 탄저병을 유발하는 'Colletotrichum higginsianum'과 시들음 병균인 'Fusarium oxysporum'이 발견되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임. 그러나 호주 유기농 원예 사업 종사자는 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호주 수자원농업부는 올해 말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임

▷ 관련 링크

<http://www.abc.net.au/news/rural/2018-04-23/organic-seed-import-anger/9679704>
<http://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risk-analysis/plant/brassicaceous-crop-seeds>

호주 : 라벨링에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알레르기 전문 용어 표기 제안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식품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와 식품 사업자를 위해 알레르기 표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함. 식품 표준 규정에 10개의 알레르기 항원을 표시하는 필수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문 용어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음. 특히 어류, 견과류, 글루텐을 함유한 시리얼 등에서 불명확한 용어 설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소비자가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알레르기 항원 표기 시 쉬운 영어로 제공할 것을 제안함

▷ 관련 링크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proposals/Pages/P1044PlainEnglishAllergenLabelling.aspx>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EU : 영국, 설탕세 (Sugar Tax) 도입

영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음료수에 대한 설탕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세금은 설탕 첨가 무알콜 음료 (1.2% ABV 미만)에 적용됨. 부담률(levy rate)과 관련하여, 100ml 당 총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의 음료수는 리터 당 18펜스(pence), 8g 이상인 경우 리터 당 24펜스(pence)임. 우유 기반 음료제품(최소 75% 우유), 100% 과일주스, 알코올 대체음료 (알코올성분이 제거된 맥주 및 와인), 설탕 함유량이 100ml당 5g 미만의 음료수 등은 제외됨

▷ 관련 링크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18/04/06/Sugar-tax-comes-into-effect-in-the-UK>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8/41/contents/made>

EU : 오스트리아, 자발적 품질 로고 개발

국내외 농산물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AgrarMarkt Austria Marketing”은 가공식품, 육류, 계란, 과일, 채소에 대한 자발적 품질 로고를 개발함. 1차 농업 생산물 및 가공처리에 대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해당 로고는 생산, 라벨링, 서류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위생을 보장함. 해당 로고를 부착한 식품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 (GMOs) 혹은 GMOs 생산으로 얻어진 성분은 미포함됨. 오스트리아 당국은 가공식품, 육류, 과일, 채소, 축산, 유기농 식품 등이 포함된 규제안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공지한 상황임. 제조업체들은 라벨링, 문서처리 등을 통해 가공지역 등의 원자재 및 식품 생산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관련 링크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18/04/11/Austria-develops-voluntary-quality-logo>
<http://www.amaexport.at/en/ama-marketing.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중국 : 식품 내 모르핀, 코데인 등 아편 알칼로이드 측정 방법 규정 발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내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노스카핀, 테바인 측정 규정안을 발표하였음. 측정 대상이 되는 식품 범주는 고품 식품(향신료, 조미료 파우더, 치킨 고품물, 육가공품 등), 반고체 식품(샌드위치 소스, 칠리 소스 및 기타 소스 등), 액체 식품(고추 기름, 스프, 액체 조미료 등)임. 해당 식품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 방법을 통해 아편 알칼로이드 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링크

<http://www.foodmate.net/law/shipin/193501.html>

중국 : 중국 허베이성, 식품 첨가물 '아질산염' 사용에 대한 특별 검사 실시

중국 허베이성의 식품의약품(FDA)은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염'의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아질산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여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질산염의 사용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함. 특별 검사 대상은 아질산염 식품 생산업체(중소 식품가공업체 포함), 식품 첨가물 판매 업체(재래시장 포함), 음식 서비스 제공업체(노점상, 소규모 음식점 포함)임. 허베이성 식품의약품(FDA)은 아질산염 관리 및 안전과 관련된 직원 교육 실시,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 아질산염 중독 사고에 대비한 비상책, 제품 라벨링에 대해 주로 검사를 실시함. 아질산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링 검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임

▷ 관련 링크

<http://news.foodmate.net/2018/04/465705.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대만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 발표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7조 ‘식품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안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에 따라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 및 최소 모니터링 주기, 기타 검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였음. 해당 초안에는 모니터링 대상의 식품 사업 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밀 수입자를 밀과 귀리 수입자, 소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별도로 구분하였음. 또한, 강제 모니터링 대상도 별도로 표기하였고, 검사 주기도 식품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6개월 혹은 매번으로 바뀌어 모니터링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

▷ 관련 링크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3954>
-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2>

대만 : 대만 위생복지부, 농약 사용허가범위 변경안 발표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농약허가사용범위표준’에 따라 농작물별 농약의 허용량을 수정하였음.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약명	농작물	허용량(ppm)
아미설브롬 (Amisulbrom)	양배추	1.0
	감자	0.05
사이안트라닐프롤 (Cyantraniliprole)	차	1.5
...

농약명	농작물	허용량(ppm)
사이노피라펜 (Cyenopyrafen)	차	20
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	잭프루트	0.1
플루오피람(Fluopyram)	피망	0.4
...

▷ 관련 링크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4008>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일본 : “건강 증진법 규정 특별 용도 표시 허가 등에 대한 내각 부령” 개정

“건강 증진법 규정 특별 용도 표시 허가 등에 대한 내각 부령 (2009년 8월 31일 내각 부령 제 57호), “특정 보건용 식품의 표시 허가(2014년 10월 30일 소 식 표 제 259호) 및 “특정 보건용 식품에 관한 질의응답집 (2016년 1월 8일 소 식 표 제 5호)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 “규제 개혁 실시 계획” 내 “특정 보건용 식품의 심사 절차” 검토를 토대로, 특정보건용 식품 심사에서 “당 식품 안전 위원회 또는 소비자위원회” 의견이 불필요한 경우를 법령에 명시함
- “부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정 보건용 식품(재허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추가됨
- 본 개정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됨

▷ 관련 링크

https://www.foods-ch.com/anzen/news_00239/

일본 : 제 9 판 식품 첨가물 공정서 발표

후생 노동성은 홈페이지에 “제 9 판 식품 첨가물 공정서”를 발표함. 2007년 발표된 제 8 판과 비교하여, 식품 첨가물 규격과 기준이 기재되었고, 일반 시험 법 및 성분 규격 재검토, 기존 첨가물의 규격 설정, 기재 방법 개선 등이 이루어 졌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 단위 및 기호 추가 및 “ml”을 “mL”로 변경
- 시험 온도 범위 개정 및 용어 정의 추가
- 미생물 한도 시험 법 관련, 곰팡이 수, 대장균 군 및 살모넬라균 시험 추가
- 성분 규격 중 순도 시험 개정 및 용어, 용례 등의 기재 통일

▷ 관련 링크

https://www.foods-ch.com/anzen/news_00241/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러시아: 비식용 젤라틴 수입 허용 법령 발표

러시아 검역기관(Rosselkhoznadzor)은 비식용 젤라틴의 수입을 허용하는 법령 No. FS-KS-7 / 9055를 발표했으며,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 및 동물사료 생산에는 사용될 수 없음. 수입 시 이러한 종류의 비식용 젤라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통관 시 우선적으로 검역당국(Rosselkhoznadzor)에 제품 통보 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러시아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제품이 수령되기 전 관련 기관에 제품을 통보해야 함. 또한 관련 규제 불이행 시 검역기관 및 세관당국이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련 링크

<http://www.fsvps.ru/fsvps/laws/5695.html>